

# 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모펀드 추가	가입 자격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25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○	-	-	-	-	-	-
2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○	-	○	-	-	○	-
3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○	-	-	-	-	-	-
4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○	-	○	-	-	○	-
5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○	-	○	-	○	○	9)
6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5 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○	-	-	-	-	-	-
7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○	-	-	-	-	-	-
8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 혼합)	-	-	-	주 1)	○	○	9)
9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○	○	9)
10	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주 1)	○	○	7), 8), 9)
11	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○	주 2)	○	○	9)
12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9)
13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5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9)
14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7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9)
15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주 3)	○	○	7), 8), 9)
16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3)	-	-	-
17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 주식)	-	-	-	주 3)	-	-	-
18	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-	-
19	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○	주 4)	○	○	9)
20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5)	-	-	-
21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-	-	-	주 5)	-	-	-
22	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6)	-	-	-
23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3)	-	-	-
24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3)	-	-	-
25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
26	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주 2)	○	○	-
27	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주 5)	○	○	-
28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29	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-	○	○	7), 8), 9)
30	미래에셋개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-	-	-	-	○	○	9)
31	미래에셋국공채전용 MMFA1 호(국공채)	-	-	-	-	○	○	9)
32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○	-	○	○	9)
33	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 ESG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-	-	-	-	○	○	9)

no.	펀드명	모펀드 추가	가입 자격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34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○	○	9)
35	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9)
36	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채권)	-	-	-	-	○	○	9)
37	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-	○	-	-	○	○	-
38	미래에셋스마트롱숏 7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9	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40	미래에셋코리아증기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○	○	9)
41	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○	-	-
42	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추가
- 2) 가입자격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6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- 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06월 30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모투자신탁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미래에셋 EMP 글로벌혁신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<신설>	[모자형 구조] -미래에셋EMP글로벌혁신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<신설>	-미래에셋EMP글로벌혁신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<신설>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미래에셋EMP글로벌혁신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국내외 ETF)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. 다만,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ETF 외의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 ②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 ETF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. 또한 일부 빅테크 기업,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등에 투자하여 테마 ETF 외에도 분산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. 투자대상 자산별 수익/위험의 특징을 고려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유한 자산배분모델을 통하여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.  *비교지수: 없음 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에 자산배분하여 분산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 상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서 비교지수를 정하지 않습니다.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신설>	-미래에셋EMP글로벌혁신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) 가입자격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[종류 C-i] 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[종류 C-i]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

	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 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종류형 구조] [종류 C-I] 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 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[종류형 구조] [종류 C-I]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 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b>3. &lt;신설&gt;</b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b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b>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b>3. &lt;신설&gt;</b>  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b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b> 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주2)

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주3)
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-	--	---

주4)

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.0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5)

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6)

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요약정보 < 투자비용 >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 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항	-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	-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
#### 6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<u>3</u>	<u>4</u>	<u>12.76</u>	<u>7.77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<u>16.67</u>	<u>10.08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<u>16.65</u>	<u>10.06</u>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4</u>	<u>10.03</u>	<u>7.39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26</u>	<u>3.7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56</u>	<u>8.42</u>
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(국공채)	6	6	<u>0.05</u>	<u>0.14</u>
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	6	6	<u>0.06</u>	<u>0.14</u>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81</u>	<u>3.28</u>
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2	2	-	<u>15.7</u>
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67</u>	<u>5.56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41</u>	<u>19.82</u>
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	2	<u>23.94</u>	<u>21.76</u>
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채권)	<u>3</u>	<u>4</u>	<u>10.46</u>	<u>8.28</u>
미래에셋글로벌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29</u>	<u>19.93</u>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1	1	<u>33.23</u>	<u>30.9</u>
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4	4	<u>6.14</u>	<u>5.55</u>
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1	1	<u>55.58</u>	<u>55.26</u>
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4	4	<u>7.3</u>	<u>7.6</u>
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1.15</u>	<u>1.7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3	3	<u>12.44</u>	<u>11.61</u>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7.52</u>	<u>20.03</u>
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.0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<u>44.13</u>	<u>47.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	2	<u>18.52</u>	<u>16.7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<u>8.77</u>	<u>9.63</u>

####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&lt;생략&gt;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 ②~③ <생략> 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 ②~③ <생략>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

		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 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